

#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277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3년 12월 19일
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‘테마파크’라는 용어는 공간적인 면에서 ‘공원(반려견놀이터)’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서울시에서 아직까지 구체화된 추진 상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‘테마파크’에 대한 정의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정책 결정 및 추진 이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.
- ‘등록의무 이행’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며, ‘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’은 ‘교육’으로 추진 가능하므로 별도로 규정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임.

## 2. 주요 골자

- “반려동물 테마파크” 정의 삭제(안 제2조제14호)
- “등록의무 이행에 따른 지원” 삭제(안 제6조의2)
- “맹견”의 출입금지 사항에 ‘불특정 다수인 이용장소’ 추가(안 제7조의3제8호)
- “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” 삭제(안 제25조제1항)
- “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설치 및 운영” 삭제(안 제29조)

## 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14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15호를 제14호로 한다.

안 제6조의2를 삭제한다.

안 제7조의3제8호 중 “맹견”을 “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맹견”으로 한다.

안 제25조제1항 중 “교육·홍보,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”을 “교육·홍보”로 한다.

안 제29조를 삭제하고, 안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13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         <p>14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13. (현행과 같음)</p> <p>14. “<u>반려동물 테마파크</u>”란 <u>반려동물의 복지 증진과 시민 여가문화 활성화</u>를 위한 <u>복합시설 및 공간을 말한다.</u></p> <p>15. (현행 제14호와 같음)</p> <p><u>제6조의2(등록의무 이행에 따른 지원) ①</u> 시장은 <u>제6조제1항의 등록에 필요한 비용 등을 마리 당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와 지원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13. (현행과 같음)</p> <p>14. (현행 제14호와 같음)</p>          <p><u>&lt;삭제&gt;</u></p>          <p><u>&lt;삭제&gt;</u></p>

제7조의3(맹견의 출입 금지 등)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- 1. ~ 7. (생략)  
<신설>

제25조(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등) ① 시장은 유기동물의 구조·보호와 입양, 동물학대 방지, 동물등록, 반려동물의 교육·홍보 등 동물보호·복지 시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자치구 또는 소속 기관과 동물보호센터, 동물복지지원센터 및 영업자, 영 제5조

제7조의3(맹견의 출입 금지 등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- 1. ~ 7. (현행과 같음)
- 8. 그 밖에 맹견으로부터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·고시하는 장소

제25조(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등) ① ----  
-----  
-----  
----- 교육  
· 홍보,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제7조의3(맹견의 출입 금지 등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- 1. ~ 7. (현행과 같음)
- 8.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맹견으로부터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·고시하는 장소

제25조(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등) ① ----  
-----  
-----  
----- 교육  
· 홍보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에 따른 단체 등에  
대하여 예산의 범위  
에서 필요한 경비를  
지원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<신설>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29조(반려동물 테마

파크의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반려  
동물 테마파크가 설  
치·운영될 수 있도록  
적극적으로 노력  
해야 하며, 반려동물  
테마파크의 기능은  
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반려동물의 복지  
증진에 필요한 기  
반시설 및 시민 여  
가 공간 제공
2. 반려동물 문화체  
험·행사지원 및  
교육 프로그램 운  
영 등
3. 반려동물 산업 및  
사회적 일자리 창  
출을 통한 지역경  
제 활성화
4. 그 밖에 반려동물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복지를 위하여 시  
장이 필요하다고  
인정하는 사항

② 시장은 소속 기관  
이 반려동물 테마파  
크를 설치하는 경우  
예산의 범위에서 필  
요한 경비를 지원할  
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 및  
제2항에 따라 설치된  
반려동물 테마파크  
를 이용하는 시민에  
게 사용료를 부과할  
수 있다.

④ 시장은 반려동물  
테마파크를 민간위  
탁하여 운영할 수 있  
으며, 민간위탁하는  
경우 「서울특별시  
행정사무의 민간위  
탁에 관한 조례」를  
따른다.

제29조 (생 략)

제30조 (현행 제29조와  
같음)

제29조 (현행 제29조와  
같음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3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맹견으로부터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·고시하는 장소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7조의3(맹견의 출입금지 등)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7. (생   략)</p> <p><u>&lt;신   설&gt;</u></p>	<p>제7조의3(맹견의 출입금지 등) 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<u>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맹견으로부터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·고시하는 장소</u></p>